

서울남부지방법원

제 11 민사부

결 정

사 건 2011가합19387 증권관련집단소송
원 고 박정현
(대표당사자)

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
담당변호사 김상원, 김주영, 송성현, 구현주
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
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(여의도동)
대표이사 고원중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화우
담당변호사 정진수, 강보라, 권동주, 김지혜, 윤병철, 이주용, 장황
림, 황혜진

주 문

이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한누리[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, 431호(서초동,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)]를 분배관리인으로 선임한다.
분배관리인은 2020. 5. 1.까지 분배계획안을 제출하라.

이 유

원고(대표당사자)가 분배관리인 선임신청을 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관여 정도 및 동종 사건의 소송수행경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분배업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라고 판단되

므로,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0. 3. 23.

재판장

판사

이유형



판사

김병진



판사

김보경

